신문부수 보고요령

한국ABC협회

차 례

□ 부수보고 요령 총론

Ⅰ. 목적 ····· 1
Ⅱ. 부수보고의 일반원칙 ····· 1

□ 신문부수보고 제출방법

Ⅰ. 보고의 단위 ····· 3
Ⅱ. 부수보고 제출시기 ····· 3
Ⅲ. 부수보고 제출방법 ····· 3

□ 신문부수보고 기재방법

Ⅰ. 양식3,4호(월별 발행·발송/유료부수) ····· 4
  1. 발행부수 ····· 4
  2. 발송부수 ····· 5
  3. 비발송부수 ····· 7
  4. 유료부수 ····· 8

Ⅱ. 양식5호(지역별 부수) ····· 12
  1. 발송부수 ····· 12
  2. 유료부수 ····· 15

Ⅲ. 양식6,7호(지국(사)별 부수) ····· 18

부수보고 요령 총론

Ⅰ. 목적

이 요령은 신문부수 공사규정에 적용을 받는 발행사 회원의 부수보고와 공사자료 준비의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부수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부수보고의 일반원칙

1. 부수보고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한 장부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2. 발행사는 각 부수보고 유형별로 보고의 기준이 되는 장부나 자료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 발행사가 보고의 근거가 되는 발행사 본사의 장부는 기업회계기준이나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고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로 증명되어야 하며, 장부명칭은 발행사 관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4. 지국과 가판은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를 바탕으로 장부를 작성하며 그 양식, 명칭, 종류 및 범위는 지국이나 가판의 크기와 관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5. 발행사는 공사대상기간에 관련된 본사와 지국의 장부를 해당기간의 공사보고서가 발간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보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부수보고는 발행부수.발송부수.유료부수로 크게 나누며 발송부수와 유료부수는 지국.가판.기타와 지역별부수로 세분함이 원칙이나, 본사우송부수가 개별구독자를 대상으로 하고, 그 우송지역이 발행사의 주배포지역과 일치할 경우 본사우송부수로 분리하여 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사우송부수가 발송이나 유료부수 10% 이상이 될 경우에 한한다.

7. 인쇄부수 중 인쇄의뢰부수를 초과하는 부수는 발행부수에 포함하여 보고할 수 없다. 단 외주인쇄 시 계약서에 인쇄의뢰 부수를 초과하는 부수의 제공에 관한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문부수보고 제출방법

Ⅰ. 보고의 단위

부수보고는 제호단위로 작성하되, 같은 제호로 간(조간, 석간)을 달리하여 발행할 경우에는 간별로 작성한다.

Ⅱ. 부수보고 제출시기

부수보고는 매월 1일부터 말일을 대상으로 작성하여 매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제출한다. 단, 예비공사를 받는 발행사는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한다.

부수보고를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발행사는 제출기한 경과 후 다음 달 15일 이내에 타당한 사유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Ⅲ. 부수보고 제출방법

부수보고는 협회가 정한 신문부수 보고양식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 협회가 정한 신문부수 보고양식은 아래와 같다.

양식3,4호 - 월별 발행·발송/유료부수
양식5호 - 지역별 부수
양식6,7호 - 지국(사)별 부수

협회 회원 등록 시 부여받은 아이디 및 패스워드로 협회 홈페이지 로그인 후 “My page탭-부수보고관리”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월별로 작성하여 파일을 업로드한다(2022. 6. 27.요령변경).

신문부수보고 기재방법

Ⅰ. 양식3,4호(월별 발행·발송/유료부수)

1. 발행부수

1-1. 일별 발행부수

발행부수란 신문인쇄 시 발생되는 흑·백파지를 제외한 순수인쇄부수로서, 신문으로 완벽한 모양을 갖추어 독자에게 배달 또는 판매가 가능한 부수를 의미한다. 일별 발행부수란에는 이러한 발행부수를 일자별로 기재한다.(해외현지 발행부수는 제외한다).

발행부수는 판매국에서 제작관련부서로 보내는 인쇄의뢰전표상의 판별부수 합, 도별부수 및 가판부수, 해외부수, 사내지의 합 그리고 부수일보상에 기재된 부수와 일치한다.

발행부수는 신문용지의 입출고, 용지사용량, 잉크사용량, 인쇄부수를 나타내는 윤전기미터기(계수기)의 수치 등에 관한 기록으로 증명이 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증명기록(인쇄의뢰전표, 부수일보, 윤전부일지, 원재료수불명세서, 외상매입장, 어음장, 현금출납부, 제조원가명세서 등)은 보관하여 공사시 제시되어야 한다.

판매국의 부수관련 장부(인쇄부수전표, 부수일보 등)상의 발행부수는 용지사용량, 잉크사용량 등이 기재된 공무국의 윤전부일지 등 관련장부로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분공장이나 외주인쇄소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윤전부일지상의 용지사용량은 자재부의 원재료수불명세서에 기재된 출고량과 외부거래 관련 명세서(구매요청서, 매입전표, 매입장, 자재수불부, 검수보고서, 지출결의서 지급전표, 지급어음장, 현금출납부, 당좌계정장 등)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용지사용량으로 부수를 계산할 경우, 용지의 평량

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발행부수란에 기재한 부수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1-2. 발행부수 합계

해당월 중 미발행일과 신문부수공사규정 제13조(부수변동)에 의해 제외한 일자 이외의 모든 일별 발행부수를 합하여 부수보고 양식3,4호의 합계란에 기재한다.

1-3. 평균발행부수

발행부수 합계를 발행일수(공사규정 제13조(부수변동) 해당일은 제외)로 나눈 부수를 부수보고 양식3,4호의 발행부수 평균란에 기재한다. 단,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2. 발송부수

2-1. 지국발송부수

발행사가 각 지국으로 보낸 부수를 기재한다. 단, 해외지국으로 보낸 부수는 기타발송부수로 처리한다.

지국발송부수는 판매국에서 발송부에 요청한 발송부수를, 송표에 기재하여 각 발송수단별로 지국으로 발송한 모든 부수를 부수보고 양식3,4호의 각 일자별 지국발송란에 기재한다.

이는 판매국의 부수일보(일계표)상의 지국부수와 일치하며, 부수증감표에 의해 부수증감을 조정한 지국을 포함한 모든 지국의 발송부수 합과 일치한다. 이와 함께 발송차량 운행일지상의 발송개수(個數)별 환산부수 및 신문지탁송서상의 역송 환산부수 등, 각 발송수단별 부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지국발송부수의 공사과정에서는 발송경로상에서 부수와 관련되는 자료를 확인하게 되므로 발송업무와 관련한 모든 기록(발송부수일지, 부수증감통지표 또는 의뢰서, 노선별 발송내역서, 발송차량운행일지, 신문지탁송서 등)을 보관하여 공사 시 제시하여야 한다(분공장, 외부인쇄 포함).

2-2. 가판발송부수

발행사가 가판업자에게 보낸 부수를 부수보고 양식3,4호의 각 일자별 가판발송란에 기재한다. 지사가 본사의 위임을 받아 가판업자에게 부수를 보낼 경우에는 가판발송부수에 포함시키나 지국에서 가판업자에게 보내는 부수는 지국발송부수에 포함시킨다.

기재하는 가판발송부수는 인쇄의뢰서상의 가판부수 그리고 발송일지상의 가판업자에게 보낸 가판발송현황상의 부수와 서로 일치한다. 가판업자에게 보낸 발행사의 부수기록과 받은 부수에 대한 가판업자의 부수기록에 의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가판발송부수의 공사과정에서도 발송경로상에서 부수와 관련되는 자료를 확인하게 되므로 발송업무과정과 관련한 모든 기록을 보관하여 공사 시 제시하여야 한다(분공장, 외주인쇄 포함).

2-3. 기타발송부수

기타발송부수는 발행사가 발송한 부수 중 지국발송부수와 가판발송부수를 제외한 모든 발송부수를 의미한다. 관련자료가 구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타발송부수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발송부수로 처리한다.

예를 들면, 독자가 발행사를 직접 방문해서 구입한 부수, 국내 또는 해외의 지국과 독자에게 발행사가 직접 우송하는 부수 등, 지국이나 가판업자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나 단체에 본사가 직접 배포하는 부수를 기재한다. 단, 발송관련기록(부수대장, 해외지국현황, 해외우송현황 등)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자료에 의해 확인될 수 없을 경우에는 비발송부수로 처리한다.

본사우송발송부수가 개별구독자를 대상으로하고, 그 우송지역이 발행사의 주배포지역과 일치할 경우 본사우송발송부수로 분리하여 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사우송부수가 발송부수의 10% 이상이 될 경우에 한한다.

2-4. 일별 발송부수 합계

발행사가 외부로 발송한 일체의 부수로서, 지국발송부수, 가판발송부수, 기타발송부수의 합을 부수보고 양식3,4호의 발송부수 합계란에 기재한다. 지국 또는 기타 외부에 발송한 부수와 관련된 근거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비발송부수로 처리하여 기재한다. 비발송 부수는 발행부수에서 발송부수를 제외한 사내지, 광고지, 예비지 등을 포함한다.

2-5. 발송부수소계 합

신문부수 공사규정 제13조(부수변동)에 의해 제외한 일자 이외의 모든 일별 발송부수소계를 합하여 부수보고 양식3,4호의 발송부수 합계란에 기재한다.
지국발송부수, 가판발송부수, 기타발송부수의 합계도 동일한 방법으로 각 부수유형별 합계란에 기재한다.

2-6. 발송부수소계 평균

총 발송부수(발송부수소계 합)를 발행일수(공사규정 제13조(부수변동) 해당일은 제외)로 나눈 부수를 부수보고 양식3,4호의 발송부수 평균란에 기재한다. 단, 소수점이하는 반올림한다.
지국발송부수, 가판발송부수, 기타발송부수의 평균도 동일한 방법으로 각 부수유형별 평균란에 기재한다.

3. 비발송부수

3-1. 일별 비발송부수

비발송란에는 해당일의 발행부수에서 발송부수를 제외한 일체의 부수를 기재한다. 사내지, 광고지, 예비지 등이 이에 포함된다.

3-2. 비발송부수 합계

해당월중에서 미발행일과 신문부수공사규정 제13조(부수변동)에 의해 제외한 일자 이외의 모든 발행일의 비발송부수를 합하여 부수보고 양식3,4호의 합계란에 기재한다.

3-3. 비발송부수 평균

비발송부수 합계를 발행일수(신문부수공사규정 제13조(부수변동) 해당일은 제외)로 나눈 부수를 부수보고 양식3,4호의 비발송부수 평균란에 기재한다. 단,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4. 유료부수

4-1. 지국(사)유료부수

지국(사)유료부수는 신문부수 공사규정 제8조(유료부수)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부수로 「지국이 독자로부터 구독료를 받은 부수」를 지국유료부수 시행세칙에 따라 기재한다. 지국유료부수는 월을 단위로 구독이 이루어지므로 월부수를 보고한다. 단, 해외지국부수는 기타부수로 처리한다.

지국이 독자에게 지대를 수금하지 못하였을 경우 보고 대상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수금이 가능한 부수를 포함하여 보고한다(예를 들면, 보고 대상기간이 10월~12월이라면 3월말까지 수금이 가능한 부수를 포함하여 보고). 단, 공사 시 수금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국유료부수로 인정하지 않는다.

지국유료부수에 대한 시행세칙은 다음과 같다.

1. 할인부수
유료부수는 구독료 정가를 원칙으로 하되, 할인 부수의 경우는 구독료 정가의 50% 이상을 수금할 경우 유료부수로 인정한다.

2. 준유가부수
예비독자에게 구독을 전제로 무료로 주는 부수(준유가부수)는 수금이 될 경우 수금개시 직전 6개월에 한해 유료부수로 인정한다.

준유가부수의 경우 공사 시 수금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준유가부수에서 제외된다.

4-2. 가판유료부수

4-2-1. 일별 가판유료부수

가판유료부수는 신문부수 공사규정 제8조(유료부수)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부수로 「반품을 제외한 판매부수」를 가판유료란에 일별로 기재한다.

판매부수는 본사와 직·간접으로 계약한 가판업자 중 반품을 확인할 수 있는 최초단위(본사를 기준으로 하여)의 가판업자가 판매한 부수이다.

발행사는 반품과 보고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판업자의 수금가능성 여부를 고려한 객관적인 증거와 자료를 토대로 가판유료 부수를 보고한다. 공사시 수금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판유료부수로 인정하지 않는다. 발행사의 위임 없이 일선 지국에서 가판업자에게 보내는 부수는 보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가판업자 중에서 가판의 배포지역이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이고 지국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 가판유료부수가 지국유료부수의 40% 이하이거나, 200부 이하 일 경우 지국유료부수에 산입하여 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송부수도 지국발송부수에 산입하여 보고한다.

4-2-2. 가판유료부수 합계

부수보고 양식3,4호의 가판유료부수 합계란에는 해당월에서 미발행일과 신문부수 공사규정 제13조(부수변동)에 의해 제외한 일자 이외의 모든 가판유료부수를 합산하여 기재한다.

4-2-3. 가판유료부수 평균

가판유료부수 합계를 발행일수(공사규정 제13조(부수변동) 해당일은 제외)로 나눈 부수를 기재한다. 단,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4-3. 기타유료부수

4-3-1. 일별 기타유료부수

기타유료부수는 신문부수 공사규정 제8조(유료부수)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부수로「지국유료부수와 가판유료부수 외의 방법에 의해 판매된 부수」를 말하며, 해외지국 유료부수, 발행사 직접판매부수, 발행사 우송판매부수(해외독자 우송판매부수)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해외지국 유료부수는「지국이 독자로부터 구독료를 받은 월부수」를 말한다. 발행사는 해외지국의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를 바탕으로 부수를 보고 한다.

발행사 본사우송 유료부수와 해외우송 유료부수는 발행사에서 공표한 월정 구독료 정가를 지불하고 구독하는 부수를 유료부수로 하며, 월부수를 보고 한다. 단, 발행사에게 공표한 할인구독료를 지불한 경우도 유료부수로 보고 한다. 공사 시 기타유료부수의 판매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발행사 판매대장 및 입금자료, 우송구독자 명단 및 입금자료, 해외우송 독자명단 및 입금자료, 항공운임청구서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단, 본사우송 유료부수가 개별구독자를 대상으로하고, 그 우송지역이 발행사의 주배포지역과 일치할 경우 본사우송 유료부수와 기타유료부수를 분리하여 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사우송부수가 발송부수의 10% 이상이 될 경우에 한한다.

발행사가 청구한 지대를 수금하지 못하였을 경우 보고 대상기간 종료 후 약 3개월 이내에 수금이 가능한 부수만을 보고한다(예를 들면, 보고 대상기간이 10월~12월이라면 3월말일까지 수금이 가능한 부수만 보고). 단, 공사 시 수금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타유료부수로 인정하지 않는다.

4-3-2. 기타유료부수 합계

신문부수보고 양식3,4호의 기타유료부수 합계란에는 해당월에서 미발행일

과 신문부수 공사규정 제13조(부수변동)에 의해 제외한 일자 이외의 모든 기타유료부수를 합산하여 기재한다.

4-3-3. 기타유료부수 평균

기타유료부수 합계를 발행일수(공사규정 제13조(부수변동) 해당일은 제외)로 나눈 부수를 기재한다. 단,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4-4. 유료부수 소계

4-4-1. 일별 유료부수 소계

일별 가판유료부수와 기타유료부수의 합을 기재한다.

4-4-2. 유료부수 소계 합

가판유료부수 합계와 기타유료부수 합계의 합을 기재한다.

4-4-3. 유료부수 소계 평균

가판유료부수 평균과 기타유료부수 평균의 합을 기재한다.

Ⅱ. 양식5호(지역별 부수)

지역별 부수 각 란에는 부수보고 양식3,4호(발행·발송/유료부수)의 보고대상 월에 기록된 발송부수 및 유료부수의 내용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지역별부수의 각 항목의 합계는 양식3,4호에 입력된 각 항목 평균값과 일치되도록 한다.

지국부수는 지국이 위치한 지역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산출한 부수를 기재한다. 가판부수는 가판업자가 위치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산출한 부수를 기재한다. 또한, 기타부수는 수취인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산출한 부수를 기재한다. 만약 수취인의 주소가 불명확하다면, 발행사가 위치한 지역의 행정구역에 포함시킨다. 따라서 지국부수나 가판부수의 배포지역이 비록 지국이나 가판업자가 위치한 행정구역과 다를 경우에도 지국, 가판업자가 위치한 행정구역의 부수에 포함시켜 기재한다. 예를 들면, 경상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지국에서 경상남도로 신문을 배포하고 있을 경우에도 경상북도 지국부수에 포함시켜 기재한다.

지역별부수는 특별시, 광역시, 도별부수로 하되 필요에 따라 그 이하의 행정구역으로 세분할 수 있다. 보고 대상기간 중 정부가 정한 행정구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변동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부수를 기재, 보고하고 이를 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1. 발송부수

위의 기준에 따라 발행사에서 지국으로 발송한 부수 중 매월 평균부수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따라서 부수보고 양식5호(지역별부수)의 발송부수소계, 지국발송부수, 가판발송부수, 기타발송부수 합계는 부수보고 양식3,4호의 발송부수소계, 지국발송부수, 가판발송부수, 기타발송부수의 평균값과 같으며, 이를 단지 지역별로 구분한 것이다.

1-1. 지국발송부수

1-1-1. 해당지역별 지국발송부수

보고 대상기간 동안 발행사가 국내 각 지역으로 발송한 매월 평균 지국발

송부수를 기재한다.

1-1-2. 지국발송부수 전국계
보고 대상기간 동안 발행사가 국내 각 지역으로 발송한 매월 평균 지국발송부수의 합을 기재한다.

1-1-3. 해외 지국발송부수
해당사항 없음(공란처리).

1-1-4. 지국발송부수 합계
지국발송부수의 전국계를 합한 부수를 기재한다. 부수보고 양식3,4호의 매월 평균 지국발송부수와 일치한다.

1-2. 가판발송부수

1-2-1. 해당지역별 가판발송부수
보고 대상기간 동안 발행사가 국내 각 지역으로 발송한 매월 평균 가판발송부수를 기재한다.

1-2-2. 가판발송부수 전국계
보고 대상기간 동안 발행사가 국내 각 지역으로 발송한 매월 평균 가판발송부수의 합을 기재한다.

1-2-3. 해외 가판발송부수
해당사항 없음(공란처리).

1-2-4. 가판발송부수 합계
가판발송부수의 전국계를 합한 부수를 기재한다. 부수보고 양식3,4호의 매월 평균 가판발송부수와 일치한다.

1-3. 기타발송부수

1-3-1. 해당지역별 기타발송부수
보고 대상기간 동안 발행사가 각 지역으로 발송한 매월 평균 기타발송부수

를 기재한다.

1-3-2. 기타발송부수 전국계
보고 대상기간 동안 발행사가 국내 각 지역으로 발송한 매월 평균 기타발송부수의 합을 기재한다.

1-3-3. 해외 기타발송부수
보고 대상기간 동안 발행사가 해외로 발송한 매월 평균 발송부수를 모두 기재한다.

1-3-4. 기타발송부수 합계
기타발송부수의 전국계와 해외 기타발송부수를 합한 부수를 기재한다. 부수보고 양식3,4호의 매월 평균 기타발송부수와 일치한다.

1-4. 발송부수소계
지국발송부수, 가판발송부수, 기타발송부수의 합을 의미한다.

1-4-1. 해당지역별 발송부수소계
보고대상월 기간 동안 발행사가 발송한 매월 평균 지국발송부수, 가판발송부수, 기타발송부수의 합을 기재한다.

1-4-2. 발송부수소계 전국계
보고 대상기간 동안 발행사가 국내 각 지역으로 발송한 매월 평균 발송부수소계의 합을 기재한다.

1-4-3. 해외 발송부수소계
보고 대상기간 동안 발행사가 해외로 발송한 매월 평균 발송부수의 소계를 기재한다.

1-4-4. 발송부수소계 합계
발송부수소계의 전국계와 해외 발송부수소계를 합한 부수를 기재한다. 부수보고 양식3,4호의 매월 발송부수합계의 평균값과 일치한다.

2. 유료부수

보고대상월의 평균 지국유료부수, 가판유료부수, 기타유료부수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따라서 부수보고 양식5호(지역별부수)의 지국유료부수, 가판유료부수, 기타유료부수 합계는 부수보고 양식3,4호의 지국유료부수, 가판유료부수, 기타유료부수의 매월 평균값과 같으며, 이를 단지 지역별로 구분한 것이다.

2-1. 지국유료부수

2-1-1. 해당지역별 지국유료부수

보고 대상기간 동안 발행사가 지대를 청구하여 수금한 지국유료부수를 각 지역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1-2. 지국유료부수 전국계

보고 대상기간 동안 발행사가 지대를 청구하여 수금한 각 지역의 지국유료부수의 합을 기재한다.

2-1-3. 해외 지국유료부수

해당사항 없음(공란처리).

2-1-4. 지국유료부수 합계

지국유료부수의 전국계를 기재한다. 부수보고 양식3,4호의 지국유료부수와 일치한다.

2-2. 가판유료부수

2-2-1. 해당지역별 가판유료부수

보고 대상기간 동안 발행사가 지대를 청구하여 수금한 가판유료부수를 각 지역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2-2. 가판유료부수 전국계

보고 대상기간 동안 발행사가 지대를 청구하여 수금한 각 지역별 매월 평균 가판유료부수를 합한 부수를 기재한다.

2-2-3. 해외 가판유료부수
해당사항 없음(공란처리).

2-2-4. 가판유료부수 합계
가판유료부수의 전국계를 기재한다. 부수보고 양식3,4호의 평균 가판유료부수와 일치한다.

2-3. 기타유료부수

2-3-1. 해당지역별 기타유료부수
보고 대상기간 동안 발행사가 지대를 청구하여 수금한 기타유료부수를 각 지역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3-2. 기타유료부수 전국계
보고 대상기간 동안 발행사가 지대를 청구하여 수금한 각 지역별 매월 평균 기타유료부수를 합한 부수를 기재한다.

2-3-3. 해외 기타유료부수
보고 대상기간 동안 해외지국 혹은 독자를 대상으로 발행사가 지대를 청구하여 수금한 매월 평균 기타유료부수를 기재한다.

2-3-4. 기타유료부수 합계
기타유료부수의 전국계와 해외기타유료부수를 합한 부수를 기재한다. 부수보고 양식3,4호의 평균 기타유료부수와 일치한다.

2-4. 유료부수소계

2-4-1. 해당지역별 유료부수소계
지국유료부수, 가판유료부수, 기타유료부수를 합한 부수를 의미한다. 지국유료부수, 가판유료부수, 기타유료부수는 보고대상월의 평균부수이다.

2-4-2. 유료부수소계 전국계
보고 대상기간 동안의 각 지역의 유료부수소계의 합을 기재한다.

2-4-3. 해외 유료부수소계

보고 대상기간 동안의 매월 평균값 기준으로 해외에서 판매된 모든 유료부수의 소계를 기재한다.

2-4-4. 유료부수소계 합계

유료부수소계의 전국계와 해외 유료부수소계를 합한 부수를 기재한다.

Ⅲ. 양식6,7호(지국(사)별부수)

지국(사)별부수에 기재하여야 할 지국(보고단위)은 「본사와 직·간접 계약한 지국」이다. 분국의 경우는 상위지국에 포함하여 보고하고 그 증거 자료는 상위지국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1. 지역명

대지역(특별시, 광역시, 도명)과 중지역(시, 군, 구명)을 기재하되, 사무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이하의 행정구역으로 세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2. 지국(사)명

지국(사)명을 기재한다.

3. 월

부수보고 대상월을 기재한다.

4. 발송부수

4-1. 각 지국별 발송부수

부수보고 대상기간 동안 발행사가 각 지국으로 발송한 평균부수를 기재한다.

4-2. 발송계

모든 지역의 지국별 발송부수를 합한 부수를 의미한다. 이는 부수보고 양식 3,4호의 보고 대상기간 각월 발송부수 평균과 일치한다.

5. 유료부수

5-1. 해당 지국별 유료부수

부수보고 대상기간 동안 각 지국의 평균 유료부수를 기재한다.

5-2. 유료계

모든 지역의 지국별 유료부수를 합한 부수를 의미한다. 이는 부수보고 양식 3,4호의 보고 대상기간 각월 유료부수 평균과 일치한다.

6. 지국장명

지국장의 성명을 기재한다.

7. 지국주소

시도 및 시군구를 포함한 상세 지국주소를 기재한다.

8. 배포구역

지국의 배포구역을 기재한다.

9. 전화번호1,2

지국의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10. 비고

지국 참고사항(지국명 변경, 폐쇄, 병합 등)을 기재한다.